

합천 적중-창녕 유어 국도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03.



국 토 교 통 부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노선 일반국도 24호선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구간의 도로 개량을 통해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최적의 도로 노선선정과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환경 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에 있음.

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내용		연장 6.5km(신설 : 5.7km, 확장 0.8km)[평가대상(4km 이상)규모에 해당]	

1.2.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환경 영향 평가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계 획 내 용		연장 6.5km(신설 : 5.7km, 확장 0.8km)[평가대상(4km 이상)규모에 해당]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실시함

<표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1.08.05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2012.05.18.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2.12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02 : 평가준비서 제출
 - 2023.0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협의회 서면 심의기간 : 2023. 2. 6 ~ 2023. 2. 22]
 - 2023.03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3.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예정)
 - 2023.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 ※ 본 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지연(5년이상) 중인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

1.5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일반국도 24호선(합천 적중~창녕 유어) 건설공사

나. 위치

- 시 점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 종 점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다. 총연장 및 폭원 : 6.5km(신설 : 5.7km, 확장 : 0.8km), 2차로 개량(11.5m)(대안 1안 기준)

라.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바.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사. 주요 계획내용(대안 1안 기준)

- 설계속도 : 60km/hr

○ 주요 시설물

- 교량 1개소(45.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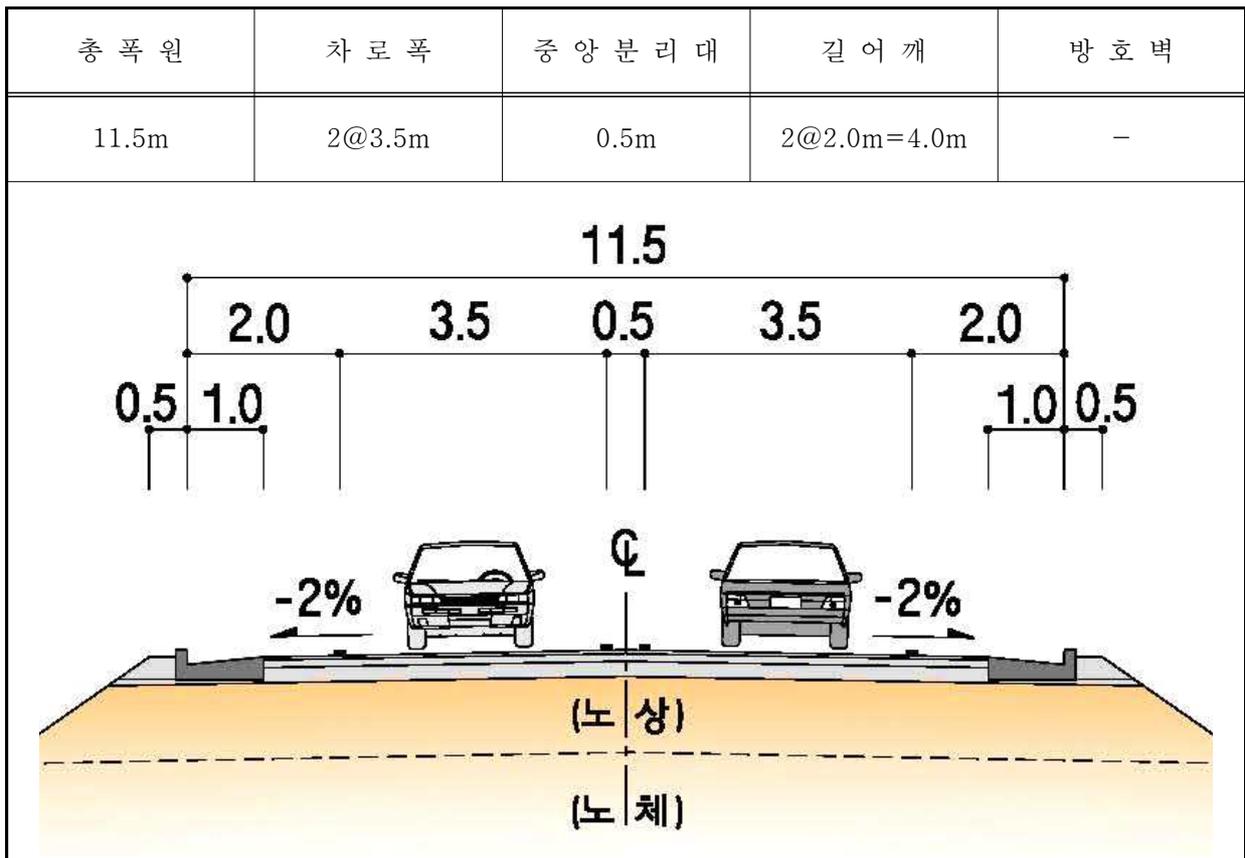
교량명	위치	교량형식	연장 (m)	폭원 (m)	통과형태	비고
제1교량	3구간 : STA.0+882.58~0+928.403 (STA. 6+162.58~6+208.403)	IPC Girder교	45.8	12.4	창녕천(지방하천) 횡단	

- 터널 2개소(8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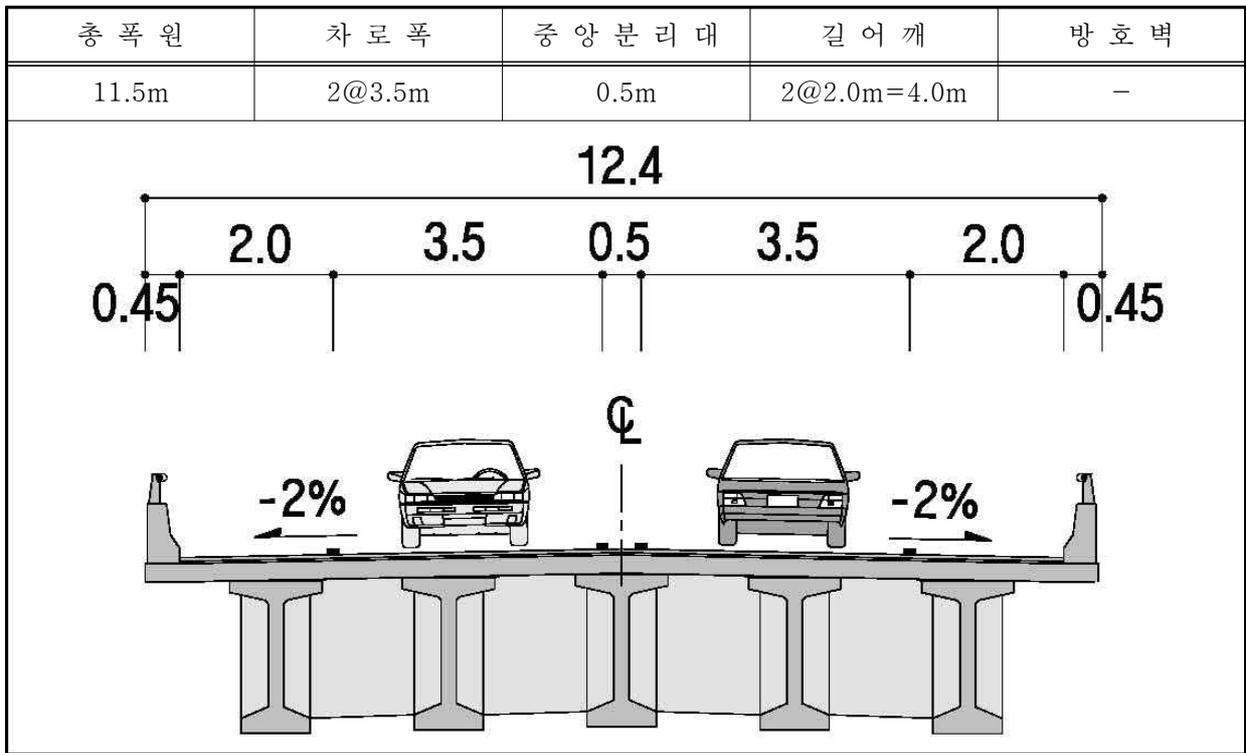
터널명	위치	연장 (m)	폭원 (m)	통과 구간	비고
제1터널	1구간 : STA. 1+180~1+510 (STA. 1+180~1+510)	330	11.301	옥두봉 통과	
제2터널	2구간 : STA. 0+705~1+195 (STA. 2+865~3+355)	490	11.301	성산 통과	

○ 표준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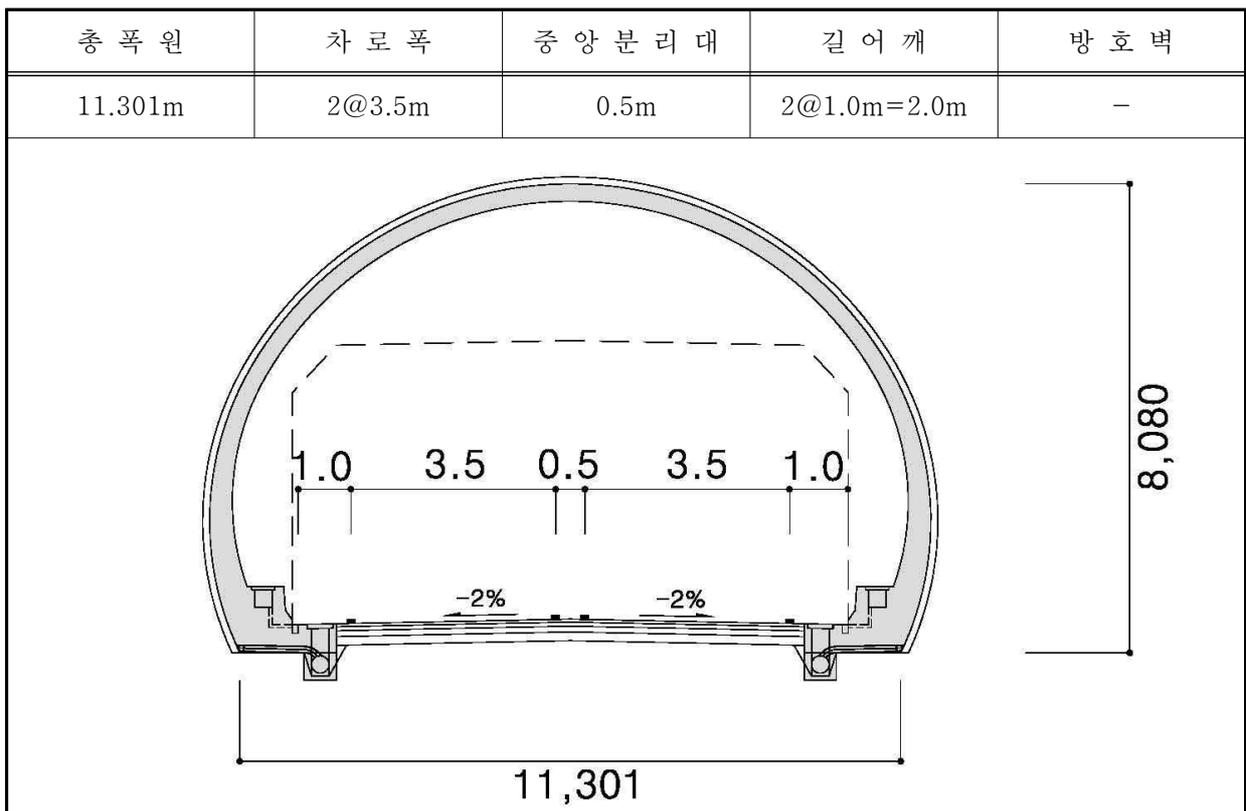
- 토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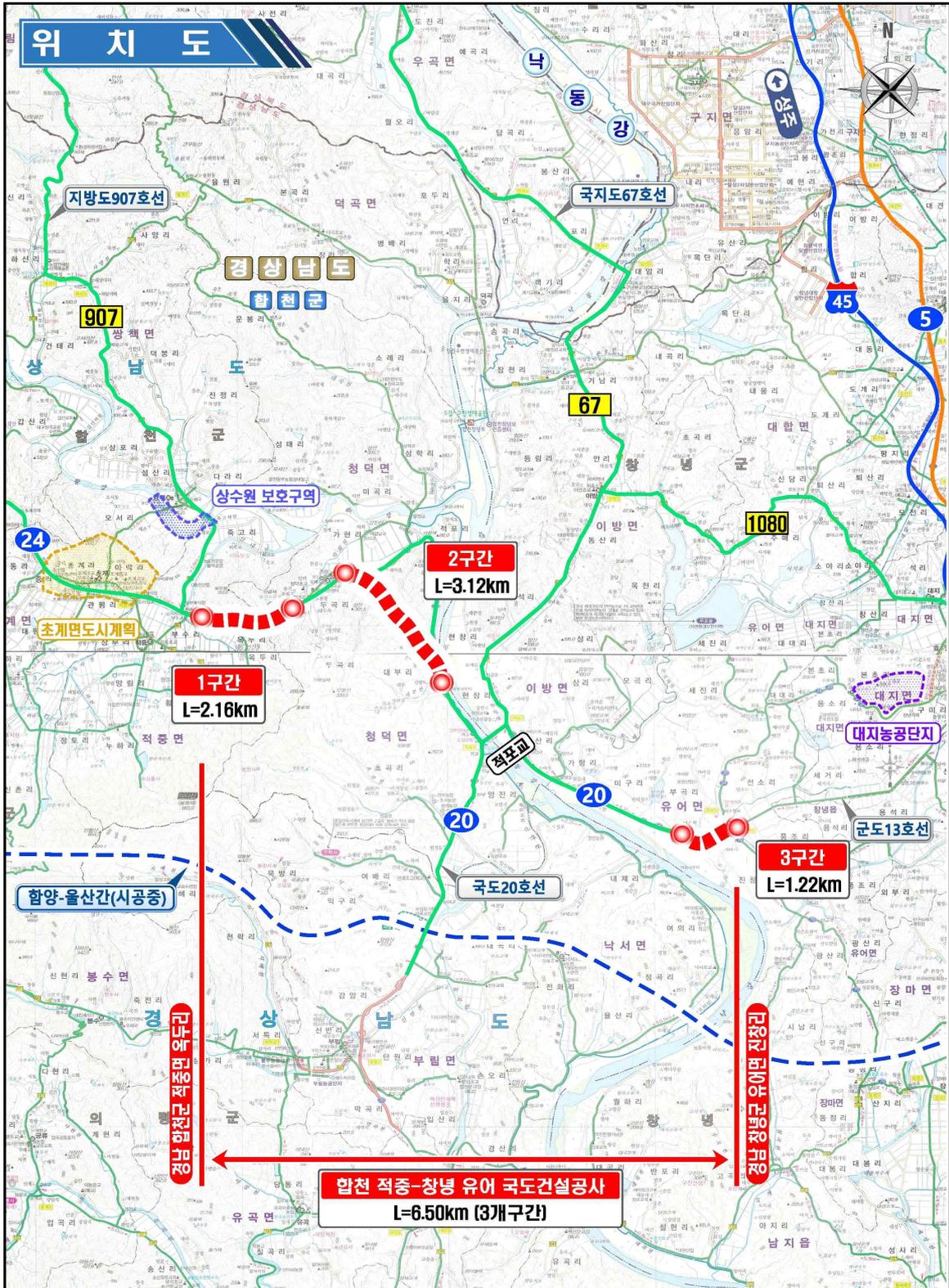


- 교량부



- 터널부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대안 1안 기준)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노선의 대상지역 설정은 노선을 계획함에 있어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2-240호, 2022.12.1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개정 2023.1.1)”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본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설정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계획의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입지의타당성	자연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노선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기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여부 검토	문헌조사 : 1.0km 현지조사 : 0.5km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검토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절·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발생구간 및 계획노선(터널, 교량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근경(반경 0.5km 이내) 중경(반경 1.0km 이내) 원경(반경 2.0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검토 ○ 운영시 수질 영향여부 검토(비점오염원 영향 등)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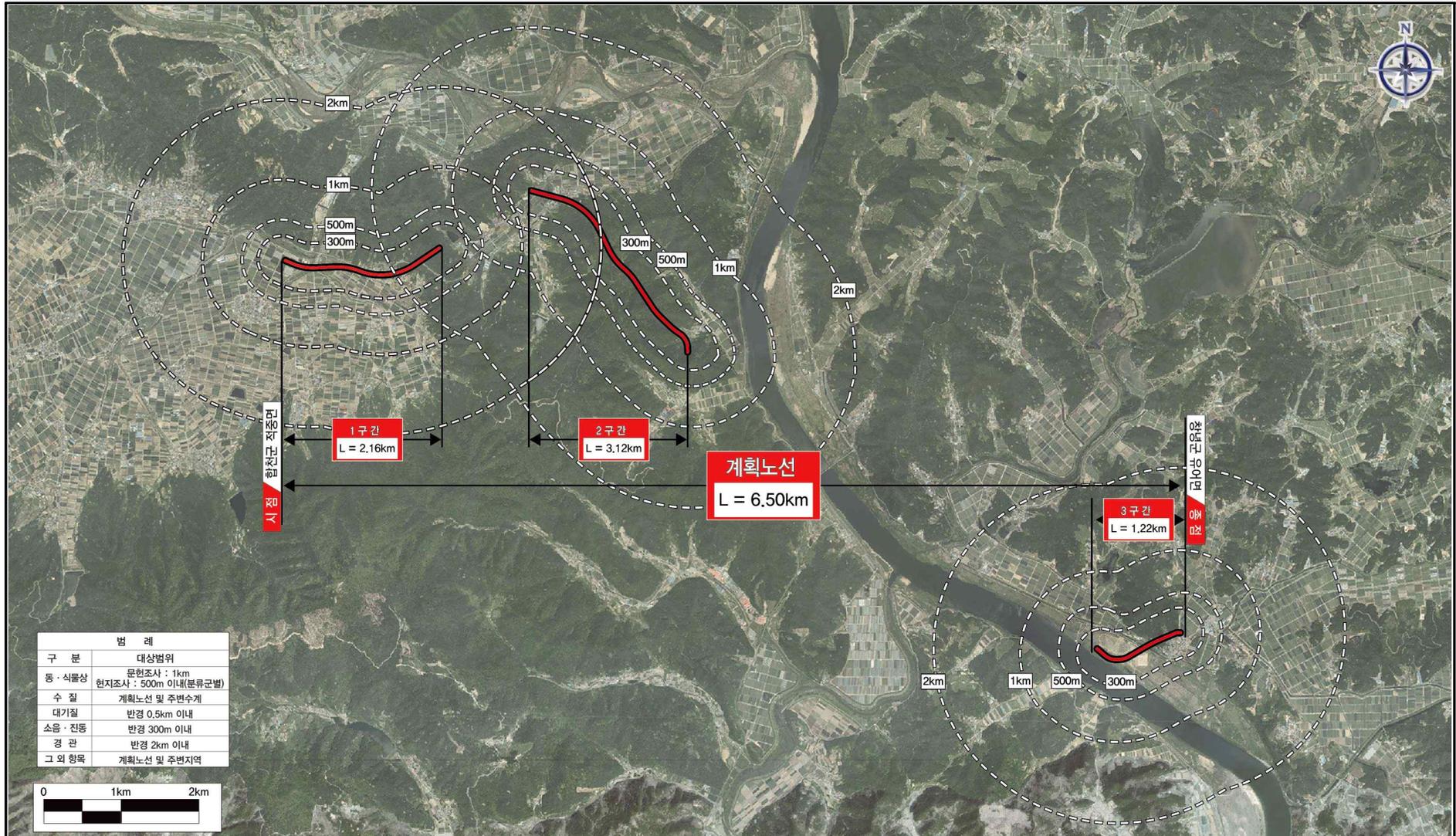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 운영시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토양	○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 장비가동시 유류 누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여부 검토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도로소음영향 여부 검토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분포여부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건설장비 폐유,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투입인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변화	계획노선	공사시	

〈표 2-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계획노선을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대기 환경	기상	○ 계획노선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타 항목의 평가자료로 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장비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교통량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지역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수 환경	수질 (수리·수문 포함)	○ 공사시 계획노선내 초기우수 발생 및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 등의 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 터널공사시 폐수발생으로 인한 수계영향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토양	○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 공사에 의한 절성토 등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	계획노선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소음진동 수준과 거리감쇠 영향을 고려한 계획노선 주변지역 ○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주변지역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00m	공사시 운영시
	경관	○ 깎기·쌓기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그림 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도(대안 1안 기준)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3.1.1 관련규정 검토

- 본 계획과 관련한 대안의 종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22-240호, 2022.12.12)”에 따라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 대안이라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해당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계획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개발기본계획 : 개발입지 대안, 중점 평가항목별 대안과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대안의 종류를 검토하여 제시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No Action 포함)을 설정함

대안종류	선정 방법	선정(안)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1.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설정의 기본방향

- 본 계획의 대안설정은 상기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계획의 특성 및 대안의 선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 따라서 본 계획의 경우 상기 대안 선정방법중 “계획비교” 및 “입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대안 1)와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대안 2)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입지」 측면에서 3가지 대안노선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음

나. 대안설정

- 설정된 대안은 계획비교, 입지에 관한 사항이며, 대안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1-2> 대안별 개요

구 분	선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1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No Action)
		2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Action)
입지	대안별 노선 선정	1안	대안 노선 1안
		2안	대안 노선 2안
		3안	대안 노선 3안

3.2 대안별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대안 1(No Action)	대안 2(Action)
토지이용 측면	○ 현상태 유지	○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원활한 교통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현상태 유지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일부 지역을 저축하나, 노선 미세조정 및 옹벽 설치 등을 통해 훼손구간 최소화
생태계훼손 가능성	○ 생태계변화 없음	○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나 터널, 교량, 측구내 경사로, 유도웁스 등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영향 최소화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지형훼손이 발생하나 종단 구배를 기존 자연 지형에 최대한 적합하게 조절하여 영향 최소화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대책으로 최소화 가능 ○ 운영시 선형 개량 및 기존 가로망과의 적정 교차 계획으로 도로 접근성 향상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경관변화 최소화 가능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현재상태 유지	○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 유지 가능
선정안	-	◎

나. 입지

- 계획노선의 선형을 입지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 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3.2-2〉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

구 분	검토1안	검토2안	검토3안	
노선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국도24호선 선형개량 및 송림재 터널통과 (L=330m) • 청덕면소재지 통과구간 기존 도로 활용(L=1.4km) • 청덕면 통과구간 직선화 노선 (터널 L=49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국도24호선 선형개량 및 송림재 터널통과 (L=330m) • 청덕면소재지 전면부 농경지측 우회통과 • 청덕면 통과구간 직선화 노선 (터널 L=49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국도24호선 선형개량 및 송림재 터널통과 (L=330m) • 청덕면소재지 우회통과 • 두곡리~대부리구간 터널통과 (L=545m) • 두곡, 대부마을 근접통과 	
연 장	L=6.50km	L=8.79km	L=7.51km	
토 공	깎 기	21.7만 ^m	22.1만 ^m	23.0만 ^m
	암버럭	6.9만 ^m	6.9만 ^m	7.4만 ^m
	쌓 기	20.1만 ^m	26.5만 ^m	44.3만 ^m
구조물	터 널	제1터널 : L=330m 제2터널 : L=490m	제1터널 : L=330m 제2터널 : L=490m 제3터널 : L=430m	제1터널 : L=330m 제2터널 : L=545m
추 정 사업비	사업비	436.8억원	542.8억원	566.2억원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로 활용 • 산지 절취 구간 최소화 • 터널연장 최소 •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 일부 저축(L=3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덕초교, 노선주변 마을 등 정온시설 근접 통과 • 산지부 절취 구간 다수 발생 • 농지편입 과다 발생 •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 일부 저축(L=3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곡마을 및 대부마을 후면 근접 통과 • 지형변화 과다(토공량 최대) • 제2터널 연장 증가 •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 일부 저축(L=600m)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2안은 청덕면구간 우량농지 편입과다 및 청덕초교 근접통과로 환경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사업비 과다로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 1안 대비 불리함 • 검토3안은 산지부 절취구간이 과다하며, 대부마을과 두곡마을 후면 근접통과로 주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비교 1안 대비 불리함 • 따라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지부 및 농경지 저축을 최소화하여 환경 훼손 및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검토1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선정(안)	◎	-	-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전략환경영향평가

4.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1〉 평가 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 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중점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 계획시행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자연 환경의 보전	중점	○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주요 정맥 등 지형·지질 변화 예상,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 계획시행으로 스카이라인 변화 등 경관 영향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수계에 영향 예상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중점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일조장해 현황 파악 ○ 계획시행시 대기질 변화 및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영향 등이 예상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일반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 여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일반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중점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 변화 예상

4.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계획의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노선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입 지 의 타 당 성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서식 환경 등)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광역)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포유류, 조류,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 : 계획노선(좌·우) - 육수동물상 : 계획노선 인근 수계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 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생태 자연도 1등급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산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근경, 중경, 원경)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 및 지하수질 현황, 오염 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수계 (산내천, 소부천, 낙동강 등)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3지점 × 1회 - 지하수질 : 2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근하천 수질변화 검토

<표 4.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입지의	생활 환경의 안정성 부 합 성	환경 기준 의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3지점 × 1회(3일 연속)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영향검토
		온실 가스	① 조사내용 : 환경기준 항목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공사시 건설장비 연료 사용 및 운영시 차량주행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2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 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토양오염 유발 요인 검토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3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소음·진동 영향 검토
타 당 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 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계획 등 검토
사회 ·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인구·주거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검토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음(<표 4.2-6>, (그림 4.2-1) 참조)

4.2 환경영향평가

4.2.1 평가항목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4.2-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 도로노선공사	○ 지형변형 ○ 수목의 벌채 ○ 절토 및 성토 ○ 굴착 ○ 토지점용, 지장물 철거
	○ 건설자재	○ 골재, 석재의 확보·운반 ○ 건설기자재 운반·가동 ○ 토사이동
	○ 시설공사	○ 교량 및 교차로 설치 ○ 배수 및 통로공사 ○ 터널공사 ○ 포장공사 ○ 공사인부 투입
운영시	○ 시설이용	○ 도로·교량·터널 ○ 배수로 및 통로
	○ 차량통행	○ 배기가스 등 발생 ○ 소음 발생

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와 숫자 6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앞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들의 상호 관련성과 크기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4.2-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	○	악영향이 크다.

<표 4.2-3>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요소	환경항목	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기 환경분야			수 환경 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리·수문포질함)	토지이용	토양	지형및생태측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인구	주거	
공사시	도로노선공사	지형변형	□	□						○			△				
		수목의벌채	□	□		□	□				△		△				
		흙깎기 및 쌓기						□		□	○		□	△			
		발파 및 굴착				□		△			□		○				
	건설자재	토지점용, 지장물철거							□	△		□					
		골재, 석재의 확보·운반				△	△	△					□				
		건설기자재 운반·가동				○	○	○			△		△	□			
	시설공사	토사 이동				○	○										
		교량 및 교차로설치	△	△				△									
		터널공사	△					□					□				
배수 및 통로공사							△										
포장공사					△	△	△					△	△				
공사인부투입						△			△		△						
운영시	시설이용	도로 및 교량	□	□	△	△	△		■			△	□	□	△	●	■
		배수로 및 통로						□									
	차량통행	배기가스 등 발생	△	△	□	□	△		△								
		소음 발생	△	△									□				

다. 평가항목의 설정

1) 평가대상 항목 설정

- 본 계획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21-300호(2021.12.30)」,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정하였음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경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자연환경자산, 기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일조장해, 인구·주거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해양환경,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산업 등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2-4〉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야	대상항목	항목선정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계획시행 전·후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예측
	자연환경자산	-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대기환경	기상	-	○	-	○ 계획노선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계획노선 차량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됨
	악취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악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온실가스	-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차량 증가 및 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포함)	○	-	-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됨
	해양환경	-	-	○	○ 계획노선은 해양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표 4.2-4 계속>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야	대상항목	항목선정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토지환경	토지이용	○	-	-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지형·지질	○	-	-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유실, 사면발생 등이 예상됨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위락	-	-	○	○ 계획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 미미
	경관	○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됨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1항에 따른 자연경관 심의 대상사업임
	위생·공중보건	-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전파장해	-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일조장해	-	○	-	○ 계획 구조물에 의한 일조 영향 예상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	○	-	○ 통계자료를 통한 계획노선의 인구현황 파악
	산 업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계		7항목	7항목	6항목	-

4.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

〈표 4.2-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영향예측 방법
동·식물상	①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및 육수동·식물상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육상동·식물상 : 0.5km ·육수동·식물상 : 계획노선 주변 수계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 자산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과악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기 상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기상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과 인접한 마산기상대 ③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약 0.5km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④조사지점 : 3지점 × 2회	○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NOx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인근 통행차량에 의한 영향 예측 - 공사시 : AERMOD 확산모델 이용 - 운영시 : CALINE-3 또는 AERMOD
온실가스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과악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표 4.2-5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수 질 (수리·수문 포함)	①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홍수현황 및 배수체계 조사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창녕천, 소부천 등)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④조사지점 -지표수질 : 3지점 × 2회 -지하수질 : 2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 (산내천, 낙동강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합리식 이용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원단위법 이용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영향예측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노선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본 계획관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참조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 2지점 × 2회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지질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특이지형·지질 분포 현황 등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문헌자료 및 본 계획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원단위법 이용
소음·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 시설 분포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약 0.3km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 3지점 × 2회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운영시 계획노선 인근 및 내부 도로 등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교통소음예측식 이용
경관	①조사내용 : 경관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 시뮬레이션
일조장해	①조사내용 : 일조장해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구조물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일조장해 영향검토 -일조시뮬레이션
인구·주거	①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통계연보)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인구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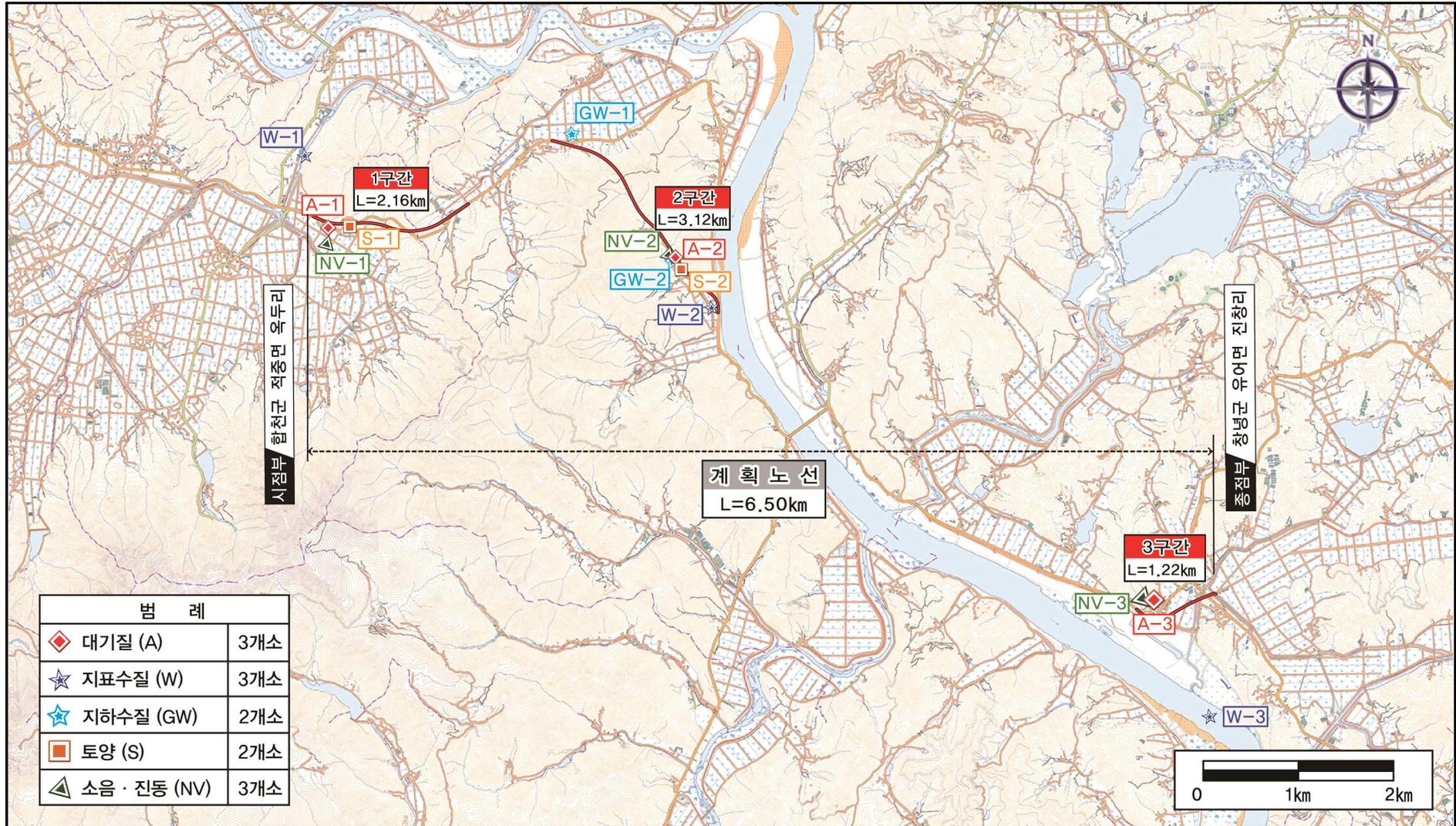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4.2-6〉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별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명	조사지점 위치	비 고
대기질	A-1	○경남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630-6	요양원
	A-2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734	가옥
	A-3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457-2	마수원회관
수 질	W-1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878-2	산내천
	W-2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대부배수장 인근	소부천
	W-3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519 인근	낙동강
지하수질	GW-1	○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비닐하우스	농업용수
	GW-2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611-2	농업용수
토 양	S-1	○경남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384	답
	S-2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638-1	전
소음·진동	NV-1	○경남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630-6	요양원
	NV-2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734	가옥
	NV-3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457-2	마수원회관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4.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도(대안 1안 기준)

제5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5.1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표 5-1〉 약식절차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사업 규모	<p>[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p>	<p>○ 약식절차 대상사업 여부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류 : 도로의 건설사업 - 사업규모 : 6.5km(신설 및 확장)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기준규모 :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 규모검토 : $(5.7\text{km}(\text{신설구간규모}) \div 4\text{km}(\text{기준규모}) + (0.8\text{km}(\text{확장구간규모}) \div 10\text{km}(\text{기준규모})) \times 100 = 150.5\%$
지역 특성	○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사업임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일부구간 생태자연도 1등급 저촉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 주변관리지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

6.1.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주민 의견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6.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 행정기관(합천군, 창녕군), 승인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협의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강원도청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적중면사무소, 창덕면사무소, 유어면행복복지센터(세부 공람 장소 추후 협의), 합천군청, 창녕군청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설명회 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내 실시
- 설명회 장소 : 적중면사무소, 유어면 행정복지센터(세부 설명회장소 추후 협의)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 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구 분	비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 없음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해당 없음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 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해당 없음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6.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행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경부장관(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
<p>○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주관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2023년 2월 6일 ~ 2023년 2월 22일
- 심의 내용 : 일반국도 24호선(합천 적중~창녕 유어) 건설공사
- 위원구성 : 총 10명
-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과장	조○○	
2	위 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김○○	
3	위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무관	조○○	
4	위 원	(주)다산건설턴트 (민간전문가)	전무	신○○	
5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주○○	
6	위 원	합천군 환경위생과	지방환경주사	서○○	
7	위 원	창녕군 환경위생과	지방환경주사	조○○	
8	위 원	합천군 적중면	주민대표	박○○	
9	위 원	창녕군 유어면	주민대표	양○○	
10	위 원	환경21연대 경남본부	본부장	김○○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위원장,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위원, 창원군 유어면 양○○위원님 의견없음

7.3.1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합천 적중~창녕 유어 도로건설공사]

— < 사 업 개 요 > —

- 위 치 : 경남 합천군 적중면~창녕군 유어면
- 사업규모 : 총 6.5km(신규 5.7km, 확장 0.8km), B=10.5m(왕복2차로)
 - 교량 1개소(45.8m), 터널 2개소(820m)
- 협의근거
 - (전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제2호 마목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제5호 도로의 건설사업 1)
- 계획수립기관(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국도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동·식물상과 자연경관 등에 훼손이 우려되므로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심의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노선의 현황사진(위성사진, 드론사진 등),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1 -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은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구상안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수요 및 지표의 타당성, 도로계획의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도로 노선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중에 생태축 및 야생동물이동로,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습지 및 각종 보호지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할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노선 변경, 교량화, 터널, 생태통로 등)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1등급지역 주변에 완충지역(1~2m 이상) 설정 등 노선을 1등급지역에서 최대한 이격·설정하여야 함.
 - 보존 가치가 있는 특이한 지형 형상 훼손여부와 훼손 시 보전대책 제시
 - 계획노선의 환경 민감지역 통과여부, 교통량 증가에 따른 CO₂ 배출 및 오염물질 증가 등 대기환경 악화여부 검토·제시
 - 기존 주거지의 단절 및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의 경우 환경기준 유지가능성 여부 및 대책(이주, 노선변경 등 대안검토) 등을 제시

3.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공통

-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예측 모델 입력 및 검증, 사후조사와 비교·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는 바, 영향예측 및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 기존 지침·통계·조사자료 등 문헌 조사 시 5년 이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 해당지역에 대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 겨울철새 등 시센서스 조사 결과, 생태계변화관찰지역 등

나. 항목별 심의의견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 시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및 발견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영향 저감방안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의 보전
 -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 시 토사 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하천 등 하류수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 소음·진동 등)
 -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 마련
 - 목표 연도까지 연도별/시간대(24시간)별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한 평가
 - 분선, Ramp 구간의 복합적인 형상 및 배치 등의 정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도로소음 평가를 위한 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
 -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누적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도로 구조물, 교량 등으로 인한 일조장해 관련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검토
 - 온실가스 검토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12.3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3.02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7.3.2 (주)다산컨설턴트(민간전문가) 신○○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합천 적중~장녕 유어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기존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서, 신설구간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계획노선 1안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훼손하여 환경상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회피하는 노선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항목의 경우, 공사유형(건설장비, 발파, 항타)별 영향 정도, 정온 시설(주거지, 학교, 축사)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필요성 검토(권고사항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검토시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연계 사업, 주변 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노선 검토1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훼손하여 직·간접적인 환경상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회피하는 노선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또한, 노선 계획시 터널입출구 대절토사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터널연장, 종단 및 평면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질항목 조사지점 확대 검토
 - 계획노선은 낙동강 등 하천수계와 인접하며, 3개구간의 하류 수계가 각기 다른 반면, 현황조사지점(지표수) 2개지점으로 계획됨. 수질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 지점수 확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고·공람, 설명회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지역민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2. 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신



7.3.3 한국환경연구원 주○○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서
(합천 적중-창녕 유어 건설공사)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도로개량이 목적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권 단절 해소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2구간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은 농경지를 경유하고 있으며 농지의 편입과 생활권 단절 등의 측면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본 사업은 도로개량이 목적이지만 약 88% 정도가 신설로 계획되어 있음. 도로개량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을 구간별로 마련하고 정성적·정량적률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으로 주요 민원의 내용과 발생 구간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간별 노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 항목 : 농경지를 경유하는 계획노선의 특성상 범정보호종(양서·과충류)이 서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특이사항 없음

2023. . 2 . 13

위원 주 [인] (인)

7.3.4 합천군 환경위생과 서○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일반국도 24호선(합천군 적중면 옥두리~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건설공사로 주변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과 저감방안을 통해 교통 안전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 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사업 시행에 따른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인근 자연환경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
3. 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추출 등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별 현지·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 의견 수렴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6. 기 타
 - 해당사항없음

2023. 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서

서○

7.3.5 창녕군 환경위생과 조○○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합천 적중 - 창녕 유어 국도건설공사)

□ 총괄 의견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신뢰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측정 횟수의 증가가 요구되며, 또한, 주민의견 수렴 시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로 컴퓨터 등 공람 방법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미인지 할 수가 있기에 현수막을 제작·게시를 하거나, 노선 주변 환경영향권 내 마을대표 및 축사주·거주자에 별도 의견수렴이 요구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소음·진동, 대기질 항목은 측정 당시의 여건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므로 측정 횟수를 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노선 주변으로 축사(유어면 유어장마로 751-34) 및 주택 등 취약시설이 있어 향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은 실정으로, 마을대표 및 노선 주변의 축사 및 주택 소유주(거주자) 대한 별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2.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조 [인]

7.3.6 합천군 적중면 (주민대표) 박○○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23. 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박

○○○

7.3.7 환경21연대(시민단체) 김○○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합천 적중~창녕 유어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환경 친화적인 도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요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 및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주민 민원 발생시 선 조치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2. 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인)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조치계획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김** 위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국도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관련계획 부합여부, 환경보전계획 부합여부 및 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동·식물상과 자연경관 등에 훼손이 우려되므로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노선별 생태네트워크 분석 및 자연경관 영향검토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p>□ 심의의견</p> <p>1.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범위)를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노선의 현황사진(위성사진, 드론 사진 등),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설정사유 등을 명기하고,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계획노선 현황사진(위성사진, 주요 조망점사진 등),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주변 사업(계획)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은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토대로 설정함. 	

위원	의 건	조치계획	비고
<p>김** 위 원</p>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수요 및 지표의 타당성, 도로계획의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부합여부, 관련 지표의 타당성 및 대안검토 등을 통하여 최적노선을 검토·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노선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중에 생태축 및 야생동물이동로,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습지 및 각종 보호지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할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노선변경, 교량화, 터널, 생태통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축 및 야생동물이동로,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각종 보호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1등급지역 주변에 완충지역(1~2m 이상) 설정 등 노선을 1등급지역에서 최대한 이격·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고려하여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가치가 있는 특이한 지형 형상 훼손여부와 훼손 시 보전대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지형·지질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훼손시 보전대책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의 환경 민감지역 통과여부, 교통량 증가에 따른 CO₂ 배출 및 오염물질 증가 등 대기환경 악화여부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온실가스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거지의 단절 및 주거지역 등 정온 시설의 경우 환경기준 유지가능성 여부 및 대책(이주, 노선변경 등 대안검토) 등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단절 및 계획노선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기준 유지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주거지 단절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겠음. 	
	<p>3.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노선 대안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을 검토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노선선정 사유 등을 명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저감방안은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선정하여 제시하겠음. 	

위원	의 건	조치계획	비고
<p>김** 위 원</p>	<p>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p> <p>가.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예측 모델 입력 및 검증, 사후조사와 비교·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는 바, 영향예측 및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조사는 평가기준 설정, 예측 입력 자료 활용 및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비교·검증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여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 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조사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침·통계·조사자료 등 문헌조사 시 5년 이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해당지역에 대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 겨울철새동시센서스 조사 결과,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 출처 등과 함께 제시하겠음. 	
	<p>나. 항목별 심의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 조사 시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산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까지 계절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시기, 지점 및 횟수)을 수립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지형도에 표기하여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및 발견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주변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및 발견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영향 저감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주변 생태자연도 및 식생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 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하천 등 하류수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류수계 및 주변지역,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토사유출수,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및 운영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 마련 목표 연도까지 연도별/시간대(24시간)별 교통량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소음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한 평가 본선, Ramp 구간의 복합적인 형상 및 배치 등의 정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도로소음 평가를 위한 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누적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별·항목별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기 구체적 사업계획 및 설계내용을 토대로 아래 사항을 재검토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목표연도, 연도별/시간대(24시간)별 교통량 및 속도를 고려한 소음평가 본선, Ramp 구간 등 형상·배치 및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고층건물 분포여부)을 고려한 3차원 소음예측모델 수행 여부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시하겠음. 누적 소음영향예측 실시 및 저감대책 강구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구조물, 교량 등으로 인한 일조 장애 관련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구체적인 구조물 계획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검토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마을방송) 등을 하여 주민설명회를 홍보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으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음.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기 검토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조정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1-300호, 2021.12.3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12.30.)에 따라 작성하겠음. 	

위원	의 건	조치계획	비고
신** 위 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기존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서, 신설구간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대안검토 등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계획노선 1안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훼손하여 환경상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회피하는 노선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검토 및 노선변경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선계획을 검토하겠음.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범위 설정사유를 제시하고, 예측·평가시 관련자료, 사용근거 등을 명시하여 타당성 있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항목의 경우, 공사유형(건설장비, 발파, 항타)별 영향정도,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축사)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필요성 검토(권고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유형 및 정온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범위를 설정함(300m).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검토시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연계 사업, 주변 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대안검토 등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예측·평가시 주변 개발 계획(사업)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누적평가를 수행할 계획임.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검토1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훼손하여 직·간접적인 환경상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회피하는 노선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검토 및 노선변경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선 계획을 검토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노선 계획시 터널입출구 대절토사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터널연장, 종단 및 평면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계획에 따른 지형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면처리계획 등을 제시하겠음.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신** 위 원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수질항목 조사지점 확대검토 -계획노선은 낙동강 등 하천수계와 인접하며, 3개구간의 하류 수계가 각기 다른 반면, 현황조사지점(지표수) 2개지점으로 계획됨. 수질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 지점수 확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 계획노선 수용하천 및 하류 하천수계 (낙동강 등)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조사 지점을 확대토록(3지점) 계획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공고·공람, 설명회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지역민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수막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7.기타 ◦ 의견 없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주**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도로개량이 목적이므로 이에 부합 하도록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권 단절 해소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노선 계획을 수립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구간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검토 및 노선변경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선계획을 검토·수립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은 농경지를 경유하고 있으며 농지의 편입과 생활권 단절 등의 측면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생활권 단절 등 민원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도로개량이 목적이지만 약 88% 정도가 신설로 계획되어 있음. 도로개량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을 구간별로 마련하고 정성적·정량적를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안에 대한 항목별 저감방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주변으로 주요 민원의 내용과 발생 구간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간별 노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생활권 단절 등 민원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항목 : 농경지를 경유하는 계획 노선의 특성상 법정보호종(양서·과충류)이 서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를 통해 계획노선 및 주변의 법정 보호종 서식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 위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일반국도 24호선(합천군 적중면 옥두리~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건설공사로 주변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과 저감방안을 통해 교통 안전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대안검토 등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 저감방안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사업 시행에 따른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인근 자연환경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공고·공람, 주민설명회, [필요시]공청회)할 계획이며,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예측·평가·환경보전방안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계획추진과정 중 주민 민원 발생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p>2.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p>3.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p>4.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추출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별 현지·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탐문조사를 병행하고,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p>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 의견수렴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할 계획임. 	
	<p>6.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없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조** 위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신뢰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측정 횟수의 증가가 요구되며, 또한, 주민의견 수렴 시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로 컴퓨터 등 공람 방법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미인지 할 수가 있기에 현수막을 제작·게시를 하거나, 노선 주변 환경영향권 내 마을대표 및 축사주거주자에 별도 의견수렴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까지 측정·조사의 대표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항목별 조사계획(시기, 지점 및 횟수)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현수막,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등)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홍보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임.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p>2.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p>3.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p>4.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대기질 항목은 측정 당시의 여건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므로 측정 횟수를 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까지 측정값의 신뢰성, 대표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시기, 지점 및 횟수)을 수립함. 	
	<p>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주변으로 축사(유어면 유어장마로 751-34) 및 주택 등 취약시설이 있어 향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은 실정으로, 마을대표 및 노선 주변의 축사 및 주택 소유주(거주자) 대한 별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렴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현수막,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등)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홍보하였으며, 주민설명회시 노선 주변 축사, 거주자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임. 	
	<p>6.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양** 위원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의견없음	-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3.대안 ◦ 의견없음	-	
	4.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	
	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6.기 타 ◦ 의견없음	-	

위원	의견	조치계획	비고
김** 위원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환경 친화적인 도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요함.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대안검토 등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3.대안 ◦ 의견없음	-	
	4.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	
	5.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6.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 및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 민원 발생시 선 조치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주민 민원 발생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7.기타 ◦ 의견없음	-	